

國際化時代に 있어서 우리나라 國際法學의 現實과 앞으로 나아갈 길

李 相 冕*

서 론

우리나라의 加速的인 國際化 趨勢에 順應併進하고 나아가서는 이를 主導해야 할 우리나라의 國際法學이 資料의 未備와 高級 人力의 不足과 封建的인 意識構造 속에서 研究 與件의 피폐로 말미암아 대체로 제 구실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은 실로 한스러운 일이다. 이 글은 현재 우리나라의 國際法學이 어떠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가를 밝히고, 그 問題點의 原因을 分析하고, 그에 대한 處方을 提示함을 목적으로 한다.

I. 國際化 時代に 발생하는 國際法的 問題들

四半世紀 전만 해도 해도 1년에 1억불을 수출하지 못했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하루에 1억불씩이나 수출하는 세계 제11위의 交易國이 되었다. 天然資源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外國에서 原料를 수입하여 풍부한 노동력을 이용하여 加工·輸出하는 輸出至上主義를 택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輸出至上主義는 물질적인 면에서 國際化를 加速하였으나, 대부분 “傳統的인 意識構造내에서의 國際化的 加速”이라는 二律背反的인 현상으로 인하여 국내 사회 각分野에 걸쳐 많은 갈등과 모순이 일어났다. 國際化에 별로 익숙하지 못한 우리나라는 國際法律 關係에 있어서도 여러가지 試行錯誤를 하고 말았다.

우리나라 정부는 1970년대 초에는 外國의 主權을 무시한 베를린 사건과 김대중사건에 관계되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더니, 1970년대 후반에는 박동선사건에 휘말려들어 對美 外交에 있어서 汚點을 남겼으며, 1980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 뇌물사건에 빠져들어 國家元首가 陳謝 訪問을 하는 受侮를 겪었다. 수년전부터 밀어닥친 美國의 通商壓力에 우리가 계속 수세에 몰리고만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美國의 情勢에 어둡고 美國法에 무식한 데다가 國際協商의 技術조차 미숙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제작년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한국산 앨범의 덤핑판정 때에도 우리나라의 정부관리들은 企業의 育成을 위해 세금을 낮게 附課하기 위해 原價를 낮게 잡은 文書를 무심코 美國側에 參考資料로 제출함으로써 한국산 앨범의 덤핑판정에 寄與한 結果가 되고 말았다고 한다.

*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助敎授

우리나라 法院도 새로운 國際法理論에 밝지 못하여 誤判을 하는 예도 있다. 駐韓 泰國 大使官 一等書記官에 대한 個人的인 債權을 訴求하고자 한 韓國人이 서울民事地方法院에 提訴하였으나 裁判部는 1985년 9월 11일 시대착오적인 絶對的 主權免除理論을 내세워 原告를 敗訴케 하였다.⁽¹⁾ 1960년대 이래로 세계적인 추세에 따르면 民事上 關係에는 主權免除理論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通說일 뿐 아니라, 이 사건은 外交官의 特權과도 관계가 없는 私人간의 法律問題인데도 이와 같이 엉뚱한 判決을 한 것은 납득이 안가는 일이다.

서울民事地方法院은 1983년 2월 3일, 런던 仲裁法院(London Court of Arbitration)에서 나온 仲裁判定文에 대한 執行判決의 請求를 棄却하였다.⁽²⁾ 이유인즉, 런던仲裁法院에서 나온 判定文이 원래 仲裁合意에 基礎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原告인 영국의 G회사가 被告인 한국의 K회사에 제시한 注文書 뒷면에 분명히 紛爭이 발생 할때는 英國法에 따라 런던 仲裁法院에서 仲裁判定을 받기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를 지시하는 文句가 注文書 앞면에 記載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當事者가 書面에 의한 明示的인 合意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仲裁合意가 없다고 判決한 것이다.

재판부에 의하면 仲裁合意는 不動文字로 인쇄할 것이 아니라 타자로 치거나 손으로 써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先進諸國의 法理와 크게 어긋나는 것이다. 仲裁合意의 存在는 이미 런던仲裁法院이 이를 인정하였던 것인데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外貨가 대량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우선 결론부터 우리나라 회사가 이기게끔 하여 놓고 判決理由를 작성하였을 可能性이 크다고 한다. 이 사건은 서울 高等法院에 가서도 역시 '愛國的인 考慮에서' 棄却되고 말았다고 한다. 이와같이 時代錯誤의이거나 不公平한 涉外事件 判例는 많이 있다. 이것들이 翻譯되어 외국으로 나가 誤判의 예로 外國의 論文이나 冊에 引用이 될 것을 생각하면 부끄러운 일이다.

II. 우리나라 國際法學의 現實과 特性

國際法은 法學의 다른 분야보다 먼저 舊韓末에 西洋의 學文의 하나로 소개되었다. 우리나라가 日本帝國主義支配下에 있던 동안에 日本學者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解放後 우리나라의 國際法學은 法學의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日帝下에서 大學 敎育을 받은 분들에 의해서 主導되었다. 이들이 받은 敎育은 大學의 學部에서 國際法을 受講한 정도였지만 해방후에 우리나라 대학의 國際法 敎育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1950년대부터 미국이나 유럽에서 國際法을 연구한 분들에 의해 西洋의 學風이 직접적으로 우리나라에 소개되기 시작하였다. 이를테면, 東京大學의 法學部를 졸업한 李漢基 教授는 美

(1) 서울 민사지방법원 판결, 84 가합 5303.

(2) 서울 민사지방법원 판결, 81 가합 6915.

서울 고등법원 판결, 83 나 1105.

國의 콜럼비아 大學에서 2년간 연구를 하고 귀국하여 1958년과 1961년에 國際法學 상/하권을 각각 출판하였는데 이 저서는 日本式 國際法學 바탕에다 콜럼비아 大學의 필립 제섭(Philip C. Jessup) 교수의 영향을 받아 美國 學風을 가미한 것이었다.

그동안 國際法學의 역사가 깊지 못한 우리나라에 있어서 國際法 學者들의 주된 임무는 先進國의 國際法學을 소개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논문보다는 교과서가 先進 學問을 소개하고 교육하는데 중요하였다. 교과서중에는 外國學者의 著書를 翻案한 것으로 보이는 것도 있었다. 논문도 外國의 학문을 소개하는 것이 다수였다. 國際法 學者들의 또 한가지 임무는 우리나라가 당면한 문제에 관하여 연구하는 것이다. 獨島問題, 在日僑胞問題, 戰爭法問題, 韓/日漁業協定問題 및 大陸棚境界劃定問題 등이 특히 강조되었다.

결국, 우리나라의 國際法學은 少數의 人員과 제한된 資料 및 素材로 어려운 여건에서 跛行的인 發達을 해온 것이 특징이다. 이를 보면, 海洋法 같은 분야는 비교적 여러학자들이 관심을 기울여, 國內學者의 論文이 海外의 저명 학술지에 출판되기도 하였으나, 國際法史나 國際河川法이나 宇宙法같은 분야는 소홀히 취급되기도 하였다.⁽³⁾

우리나라의 國際法學의 현재의 수준을 단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말하여 극히 制限된 분야를 제외하고는 아직도 우리나라의 國際法學은 대체로 선진국의 발전된 학문을 소개하는 단계에 있다고 생각된다. 一次 資料에 의한 오리지널 研究를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현실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몇가지 분야를 제외하고는 그리 많지 아니하다.

우리나라 학자들이 쓴 대부분의 저서에는 註가 없거나 설사 있더라도 ‘어디서 어디까지 배겼다’는 식으로 극히 形式的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翻案을 한 原本에 註가 없어서 翻案한 저서(?)에 마저 註가 있을 턱이 없는 경우도 있다. 論文의 경우에도 오리지널한 연구적이고 대부분이 外國의 學問을 紹介하는 것이기 때문에 論點이 흐리거나 缺如된 것이 많으며 資料의 制約으로 말미암아 外國의 學者가 引用한 것을 再引用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말하여, 우리나라의 國際法學은 대체로 後進的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생각된다.

Ⅲ. 國際法學의 發展을 위하여 克服하여야 할 課題

學問의 發展에 있어서 基本的인 3大要素는 研究人員, 研究資料 및 研究環境이다. 우리나라 103개 大學校 및 大學중에서 58개 大學에 國際法이 開設이 되어있으나 이 중에서 國際法 專任教授는 서울大學校에 4인, 高麗大學校와 慶熙大學校 및 韓國外國語大學校에 각각 2인씩 있고 나머지 55개 대학에는 國際法 教授가 1인이 있는 곳도 있고 전혀 없는 경우도 상당수에 이른다. 大韓國際法學會에는 약 250명 정도의 회원이 있다고 하나, 實際 活動을

(3) 예를들면, 筆者가 1981년과 1982년에 美國國際法學會誌(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에 韓國人으로서의 처음으로 論文을 發表한 바 있다.

하는 會員은 약 100명 내외다. (世界)國際法協會(International Law Association) 韓國支部에도 會員이 103명 밖에 안된다. 이처럼 國際法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의 수가 적기 때문에 細分化된 分科研究會 같은 것을 만들기도 어렵고 會費를 걸어서 學會를 운영한다는 것도 힘겹게 된다.

우리나라에는 圖書館의 藏書와 施設이 너무나 빈약하다. 현재 우리나라 大學圖書館 중에서 가장 巨大하다는 서울大學校의 圖書館은 미국에서 150번째의 下流大學인 케이스 웨스턴 大學의 圖書館 보다는 상당히 貧弱한 실정이다. 國際法關係 海外學術誌는 거의 들어오지 않고 있다. 法學圖書館의 藏書規模는 세운지 27년 밖에 안되는 日本의 立敎大學法學部圖書館의 藏書의 10분의 1정도 밖에 안되며, 20여년 역사밖에 안되는 하와이 大學校 法學圖書館의 藏書의 20분의 1도 안된다. 현재 서울대 法學圖書館에 소장하고 있는 國際法 藏書는 2천여권에 지나지 않는다. 이와같이 저조한 圖書館을 가지고 어떻게 大學院中心 大學이 되어 大學의 敎授要員을 供給할 수 있는지 의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新聞報道에 의하면 서울大學校의 圖書購入費가 總學長등 補職敎授들의 判公費 보다는 적으며 學生指導費의 약 절반정도밖에 안된다고 한다.⁽⁴⁾ 우리사회에는 '표시안나는 圖書購入' 보다 '보다 더 중요한 걸치레'에 쓰는 經費가 너무나 많다. 文教政策의 立案者들은 대부분 圖書館에 책이 좀더 있건 덜 있건 별반 문제가 안되는 줄 알고 있는 것 같다. 先進國의 名門大學에 가면 의례 圖書館 書架를 보여주면서 자기네 大學의 水準을 자랑한다. 우리의 경우는 장서가 너무나 빈약하여 圖書館 내부를 보여주기가 민망하다. 주지하는 바와같이 서울大學校 法學圖書館은 애초부터 "무려 일만오천권"이나 되는 法學圖書의 切半 밖에 所藏하지 못하도록 小規模로 지어 놓았다. 도서를 많이 구입하여 알찬 圖書館을 만들겠다는 생각은 애당초부터 없었던 것 같다. 이러한 걸치레의 의식구조와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近視眼的인 思考方式이 바로 우리나라의 학문의 後進性을 永續하는 要因이다.

이와같이 研究資料의 不足은 法學의 모든 분야에 공통인 것처럼 보이겠지만, 國內法인 경우에는 연구자료의 상당한 부분이 우리말로 된 자료로써 국내에서 손쉽게 구득할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國際法의 경우에는 전 세계가 그 무대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資料를 외국에서 구득해야만 한다. 國際法學의 연구에는 자료가 없으면 연구가 불가능하고 자료가 빈약하면 研究結果가 貧弱해지므로 國際法學의 발달을 위해서는 圖書館의 整備가 무엇보다도 緊要하다.

실사 研究人員과 研究資料가 웬만큼 갖추어져 있다손 치더라도 研究環境이 좋지 아니하면 研究結果가 좋을 수 없다. 催淚彈 가스가 없는 쾌적한 研究雰圍氣가 아쉬운 것은 물론이다. 研究施設이 낙후되고 研究補助員이 부족하여 研究의 活性化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 우리 學界에서는 研究補助員으로 하여금 研究하고 執筆하게 하고 敎授가 補助를 하는

(4) 대학신문, 1986년 4월 7일.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곳도 있다. 基本的으로 學者는 研究를 해야하고 研究補助員은 모름지기 補助員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러한 基本原則이 顛倒되면 학문의 발달은 커녕 退步를 재촉할 것이다. 우리 학계에 아직도 殘存해 있는 李朝式 封建主義的 非合理主義를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

前近代의인 封建的 意識構造속에 자료마저 현저히 부족하고 연구분위기조차 엉망이니 法學教育이 제대로 되기 어렵다. 대부분의 大學에서는 叙述式으로 된 教材를 택하여 教授 혼자 講演하는 식으로 講義를 하고 있으며, 大學院의 세미나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歐美書籍의 講讀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에서는 國際法이라고 하면 의례 國際公法을 의미하며, 國際去來法은 제계가 서있지 않고 國際私法은 涉外私法을 의미할 뿐이다. 國際公法의 경우도 帝國主義 法學者인 오펜하임과 日本 帝國主義 학자들의 영향을 받아 平時法이니 戰時法이니 하는 舊態依然한 分類方式을 쓰고 있다. 美國의 하버드대나 콜럼비아대와 같은 명문대학에서는 國際法 및 比較法講座가 法科大學院 전체 講座數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하버드대의 경우, 國際公法을(傳統的인 國際公法 외에도)유엔法, 海洋法, 國際機構法, 國際紛爭處理法, 國際節次法, 國際人權法, 戰爭法, 國際協商 등으로 나누어 가르치고 있으며, 國際去來法도 國際貿易去來法, 歐洲共同體法, 國際商事仲裁法, 新國際經濟秩序法, 트란스내셔널法, 國際通商規制法등으로 細分化하여 가르치고 있고, 國際私法도 涉外私法, 國際私法, 國際企業法, 國際投資法 등으로 다양하다. 심지어는 比較法的인 차원에서 中國國際法 日本國際法도 가르치고 있을 정도이다.

IV. 國際法學의 發展方向

國際法學은 다른 어느 법학 분야보다 資料의 海外 依存度가 높다. 國際法學을 발전시키려면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圖書館의 확충이다. 우리가 갖추어야 할 圖書館 藏書 중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海外 著名學術誌이다. 이에 못지 않게 귀중한 것이 유엔 등 國際機構에서 생산되는 一次資料이다. 우리나라에는 두 세군데 유엔 關係 資料를 모으는 圖書館이 있으나 규모가 貧弱하기 짝이 없다. 서울대학교 圖書館에는 이러한 유엔關係 專門資料가 전혀 들어오지 않고 있는 것은 실로 한심스러운 일이다.

海外學術誌와 유엔關係 一次資料가 우리나라에서 소홀히 취급되어 온 것은 豫算이 부족한 탓도 있겠으나, 대다수의 國際法 學者들이 國際法學의 각 방면에 걸쳐서 오리지널 研究를 소홀히 한 점도 排除할 수 없을 것이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一次資料를 분석하는 것보다 알기 쉽게 쓴 論文을 선호하고 論文보다는 教科書의인 책을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이러한 無事安逸主義는 우리나라의 國際法學을 後進시키는 지름길이다.

이러한 前近代의인 풍토를 불식시키려면 우선 公正한 論文評價 制度를 이룩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國際法 關係 學術誌가 한 두가지 밖에 없다.⁽⁵⁾ 提出된 原稿를 編輯하지 않고 그냥 싣는다. 그것도 出版할 原稿가 없어서 절절때는 경우가 많다. 우수한 論文이 많이 나오고 그 가운데서 극히 우수한 論文을 선별해서 필요에 따라 다시 편집해서 실어야 한다. 論文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수한 論文에 대하여 褒賞을 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國際法學을 발전시키려면 기존 學者들이 精誠을 다하여 責任있는 研究를 행하고 그 研究結果를 자유로이 發表할 수 있어야 한다.⁽⁶⁾ 우리나라 學者들은 先進 外國에 비하여 일반적으로 늦게 學界에 進出했다가 일찍 사라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늦게 출발하는 것은 軍服務등 社會的인 要因이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 位階秩序를 따지는 李朝式 封建主義에 기인하는 것 같다. 선진국의 경우에 유명한 國際法 學者들은 20대에 등장하여 80代에도 왕성한 研究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학자들은 60歲만 되어도 研究를 斷念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아마도 健康問題와도 관련이 있겠으나 李朝式 封建主義의 思考方式 下에서 年輪에 의존하는 權威意識에 其因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우리나라 國際法學 發展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아쉬운 것은 學會의 活性化이다. 우리 學者들이 어려운 與件에서 서로 激勵하고 研究雰圍氣를 振作시키려면 積極的인 學會 活動이 요청된다. 우리나라의 大韓國際法學會가 비록 國內의 다른 法學會 보다는 다소 活動的인 면이있다고는 하나 先進國의 경우에 비하여 그 활동이 상당히 消極的이다. 우선 大韓國際法學會의 年例總會에는 學術行사가 없다. 美國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國際法學會의 年例總會가 學術行사를 하기 위하여 3~4일간 계속되는 것이 보통이다. 1986년 8월하순 世界國際法協會(International Law Association)總會가 서울에서 열려 300餘名의 國際法 學者들이 전 세계에서 모여들어 1주일간 열띤 討論을 했다. 우리나라 학자들의 상당수가 世界國際法協會 韓國支部의 協力體制 문제를 놓고 끝내 消極的인 態度를 보이고 參加하지 않은 것은 실로 한스러운 일이다. 世界國際法協會 서울總會를 기점으로하여 韓國支部가 좀더 왕성한 學術的인 활동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현단계에서 우리나라의 國際法學을 발전시키는 것이 李朝式 封建主義的인 意識構造下에서 지극히 어렵다면, 한가지 기대해 볼만한 것은 새로운 世代를 위한 教育일 것이다. 國際法의 基本的인 教育은 資料가 不足한 가운데서도 教授의 誠意에 따라 어느 정도 效果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각 大學에서는 教科書 하나를 가지고 注入式 教育을 하고 있다. 事案方式(case method)은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 적당한 教材가 별로 없는 탓도 있겠으나, 教授 자신의 事案方式에 그다지 親熟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일

(5) 大韓國際法學會 論叢은 1953년에 創刊되어 1956년부터 매년 刊行되고 있으나, 世界 國際法協會 韓國支部에서 發行하는 國際法協會 論叢은 1970년에 創刊되었다가 1986에 비로소 제 2 권을 내놓았을 뿐이다.

(6) 우리나라에는 현재 학생이나 초학자들이 논문을 발표할 수 있는 學術誌가 없다. 1974년에 학생들의 손으로 편집된 서울 梨花 國際法論叢이라는 것이 있었으나 創刊號에 그치고 말았다.

것이다. 學部의 教育은 그런대로 資料가 부족한 가운데 그럭 저럭 꾸려갈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大學院 教育은 資料가 없이는 거의 不可能하다. 圖書館 施設이 지극히 後進狀態인 우리나라에서는 大學院 教育이 제대로 되기가 극히 어려우므로 우리나라의 大學에서는 教授要員의 自體 生産能力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海外 先進國에 留學生을 積極的으로 派遣할 必要가 있다.

結 論

우리나라의 國際法學은 아직도 先進國의 學風을 소개하는 段階에 있으며, 그것조차도 資料의 未備와 前近代的인 意識構造로 말미암아 研究와 教育이 대부분 後進性을 면치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난국을 극복하는 길은 國際法 학자 한사람 한사람의 良心과 精誠을 모아 새로운 研究風土를 형성하는 것이며, 國際法學의 發展이 國家的인 重大한 問題인만큼, 資料의 擴充 및 研究 與件의 造成을 위하여 凡國家的인 次元에서 大悟覺醒과 刻苦의 努力이 필요하다. 이와같이 擴充된 資料와 새로운 風土에 健全한 研究 環境을 造成한다면 우리나라의 國際法學은 명실공히 世界속의 國際法學으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다.